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38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17.3.30.)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관련 구세 감면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2017.3.30.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고,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관련 구세 감면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안 제17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감면율을 100%로 유지하는 것임.

 - 그 밖에 부칙으로, 적용례와 적용시한은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6.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본조신설2014.12.31.]